

제주지방법원 2024. 11. 20 선고 2024가단66824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주로

담당변호사 김선우, 이용준

피고1. C

2. D

3. E

4. F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4. 11. 20.

주 문

1. 원고 A에게, 피고 C, D는 공동하여,

가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52㎡, ㅂ, ㅅ, ㅇ, ㅈ,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37.4㎡, ㄷ, ㅈ, ㅊ, ㄱ,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14㎡ 각 지상에 축조된 각 각관파이프 및 징크판넬조 스티로폼판넬지붕 건물을 철거하고,

나.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
2. 원고 B에게,

가. 피고 C, D는 공동하여,

- 1)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근, ㄷ, ㄹ, ㄴ, 근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라)부분 14㎡, ㄷ, ㄹ, ㄴ,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마)부분 8㎡ 각 지상에 축조된 각 각관파이프 및 징크판넬조 스티로폼판넬지붕 건물을 철거하고,
 - 2)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,
- 나. 피고 C는,
- 1)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과,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, ㅎ, ㄱ', ㄴ',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바)부분 37.4㎡, ㄴ, ㄴ, ㄷ', ㄹ',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사)부분 25㎡ 각 지상에 축조된 각 각관파이프 및 징크판넬조 스티로폼판넬지붕 건물을 각 인도하고,
 - 2) 2024. 7. 19.부터 위 1)항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083,3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
- 다. 피고 D는,
- 1)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 - 2) 2023. 11. 15.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2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
- 라. 피고 E, F는 별지 목록 제3, 4항 기재 각 건물로부터 퇴거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 4. 제1,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- 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 '성명불상자'는 'F'로 본다,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, 제208조

제3항 제1호).

판사김은성

별지